

조합업무 관련 ‘질의회신’ (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조합원사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여 ‘질의회신’ 코너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16.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화신98-31 (1998. 10. 19)]

질 의 요 지

1.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조합의 보증책임한계

회 신 내 용

[업무300-619 (1998. 10. 29)]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을 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명시하고 있고,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을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에 시공하는 기계설비공사인 경 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령에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도급계약이 정한 바 에 따르면 규정함에 따라 일부 발주처에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종별로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서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계약)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조합의 보증규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건 설산업기본법·령·정관·제규정 또는 약정서 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리조합은 위와 같이 불평등 관계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하자기간에 동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법인 양도·양수 시 보증서 효력승계에 대한 질의 [미도파9707-302 (1997. 7. 22)]

질의요지

1. 당사에서 설비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계약이행에 관한 제반보증서(계약이행, 하자보수, 선급금지급)를 징구하고 있는 바, 현재 보관 중인 귀조합 발행보증서의 효력에 관한 문의사항을 드리오니 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당사는 '97년 8월 중순경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대표자 변경을 시행할 예정인 바, 이러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반 보증서 효력이 양수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서 각각을 변경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류상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업무(1)300-209 (1997. 7. 30)]

1. 귀사(보증채권자)가 법인 양도·양수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우리조합 보증서 뒷면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얻는 경우 보증의 효력이 계속됨을 알려드리오며,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요청은 보증서 발행 해당지점으로 법인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건설업면허양도인가서 사본, 등기부등본, 당해보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선급금지급보증서 등과 같이 보증금액의 일부가 정산되는 보증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확인서(보증잔액 표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증채권자의 현장소장 명의로 계약체결 시 보증가능 여부 [광주300-124 (1997. 3. 18)]

질의요지

보증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이사가 아닌 현장소장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이 경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업무(1)600-86 (1997. 3. 19)]

보증규정상 보증채권자는 계약서 상의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급인의 주소· 상호

는 법인의 명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당사자만 수급인의 공사현장소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인의 내부문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조합에서는 이를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을 대표한 정당한 계약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법인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19. 납품설치와 관련한 공사금액의 범위 [업무(1)300-43 (1997. 2. 5)]

질 의 요 지

1. 완제품인 냉방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계약금액이 1억원이나 완제품인 냉방기기의 가격이 9,000만원이고 설치비가 1,000만원인 경우 전체계약금액을 설비 공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2. 하수급인이 완제품인 온풍기를 구입하여 납품하면서 이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배관 등을 설치하는 온풍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전체계약금액을 설비 공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건경58070-452 (1997. 2. 25)]

냉방기기 및 온풍기 등의 완제품을 납품만 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체계약금액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